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2017. 2. 28) 및 제도개선부-341(2017.03.07)호  
관련사항입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1)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변경
- 2)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연료전지 등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

나. 검사업무처리방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전기저장장치 정기검사 시기 적용방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 1) 2017.2.28 전 사용전검사 실시고객은 차기 정기검사를 2021.2월 입력
- 2) 2017.2.28 이후 사용전검사 실시고객은 차기 정기검사를 사용전검사 합격일 기준 4년 이내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적용방법

- 1) 검사수수료는 현행 “고객지원부-4217(2016. 12. 31)” 호의 해당설비 수수료를 정부승인 전까지 아래 “2) 검사대상 및 수수료 적용방법” 적용
- 2) 사용전검사대상 및 수수료 적용방법

발전설비 구분		사용전검사 대상	수수료 적용방법
태양광	태양전지	설치 또는 전체모듈대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해당 “기본료” 적용 (1대 초과시 추가 수수료 없음)
	전력변환장치	설치 또는 대체	
연료전지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공사”의 해당 “기본료” 적용 (1대 초과시 추가 수수료 없음)
	전력변환장치	설치 또는 대체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전기저장장치 설치공사”의 해당 “기본료” 적용 (1대 초과시 추가 수수료 없음)
	전력변환장치	설치 또는 대체	
전기설비 계통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수용설비 변경공사”의 “차단기 변경공사” 적용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수용설비 변경공사”의 “변압기 변경공사” 적용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수용설비 변경공사”의 “전선로 변경공사” 적용

3) 전기저장장치 정기검사 수수료 : 사용전검사 수수료 준용

1.5.1.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sup>주1)</sup>	신고가 필요한 것 <sup>주2)</sup>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주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

주2) 전기사업용은 시·도지사에서 수행, 저가용은 우리공사에서 수행